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7호

도시관리계획(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59(2018.8.16.)호로 도시관리계획(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,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에 대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23일
서울특별시

I. 결정(변경)취지

- 당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59호, ' 18.8.16.) 이전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25(' 18.7.19.)호로 결정·고시 된 '동대문구 장안동 459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 정정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[정정 전]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장한평(성동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용답동 232-6일원	120,730	감)120,730	-	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75호 (2007.08.16.)	
기정	②	장한평(동대문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동대문구 장안동 415,436번지 일대	174,381	감)174,381	-	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53호 (2007.10.11.)	
변경	③	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용답동, 동대문구 장안동 · 답십리동 일대	-	증)523,805	523,805	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[정정 후]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장한평(성동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용답동 232-6일원	120,730	감)120,730	-	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75호 (2007.08.16.)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②	장한평(동대문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동대문구 장안동 415,436번지 일대	174,381	감)174,381	-	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53호 (2007.10.11.)	
기정	③	동대문구 장안동 459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동대문구 장안동 459-1번지 일원	1,900.2	감)1,900.2	-	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5호 (2018.07.19)	
변경	④	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용답동, 동대문구 장안동 · 답십리동 일대	-	증)523,805	523,805		

2.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[정정 전]

구분	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523,805	-	523,805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17,369	-	17,369	3.3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40,613	-	40,613	7.8	
제2종일반주거지역	67,838	-	67,838	13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114,054	감)4,030	110,139	21.0	
준주거지역	92,048	증)4,030	95,963	18.3	
일반상업지역	119,478	-	119,478	22.8	
유통상업지역	72,405	-	72,405	13.8	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[정정 후]

구분	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523,805	-	523,805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17,369	-	17,369	3.3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40,613	-	40,613	7.8	
제2종일반주거지역	67,838	-	67,838	13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112,154	감)4,030	108,124	20.6	
준주거지역	93,948	증)4,030	97,978	18.7	
일반상업지역	119,478	-	119,478	22.8	
유통상업지역	72,405	-	72,405	13.8	

3.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관한사항 : 변경내용 없음

Ⅲ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.고시에 갈음합니다.

Ⅳ. 관계도면 : 불임 참조(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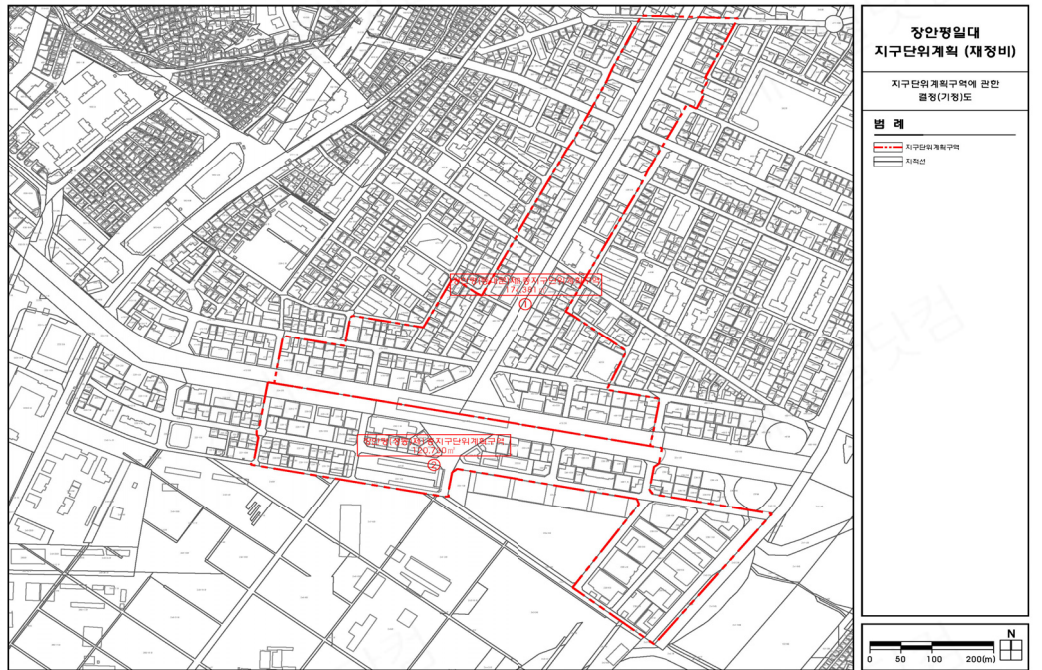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Ⅴ. 관계서류 열람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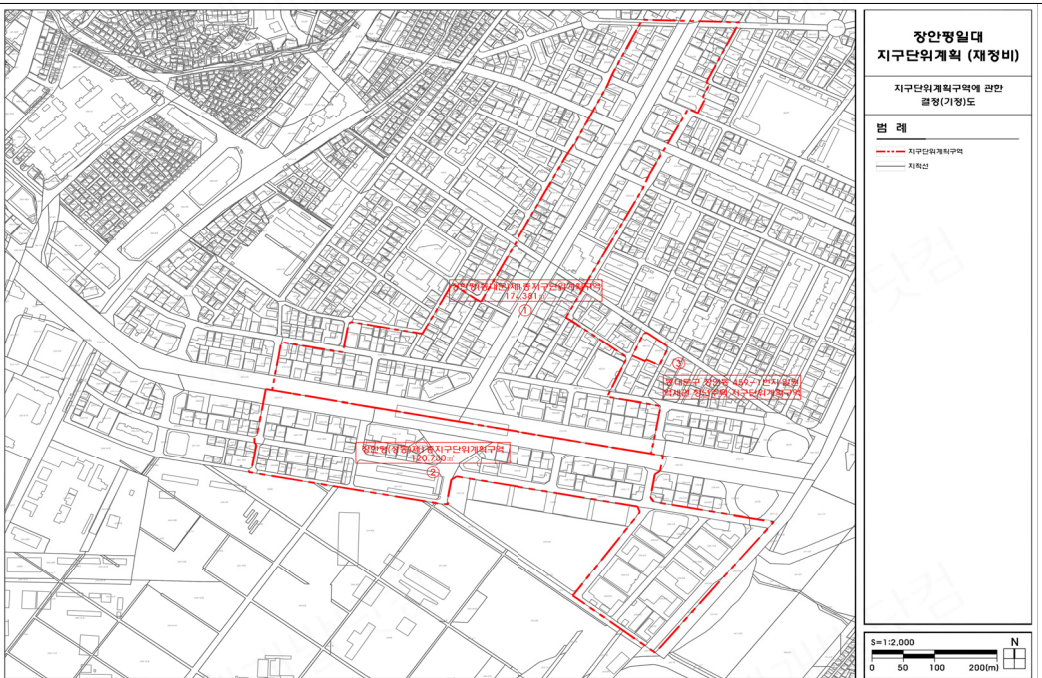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 02-2133-4641), 성동구청 도시계획과(☎ 02-2286-5560), 동대문구 도시계획과(☎ 02-2127-494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기정)도(정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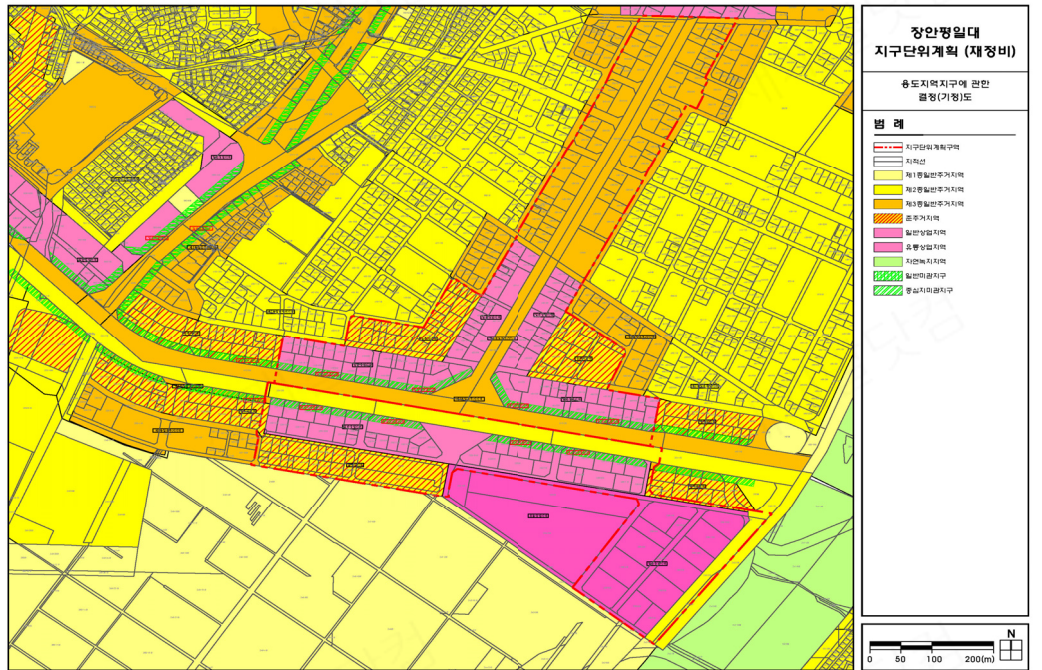


정정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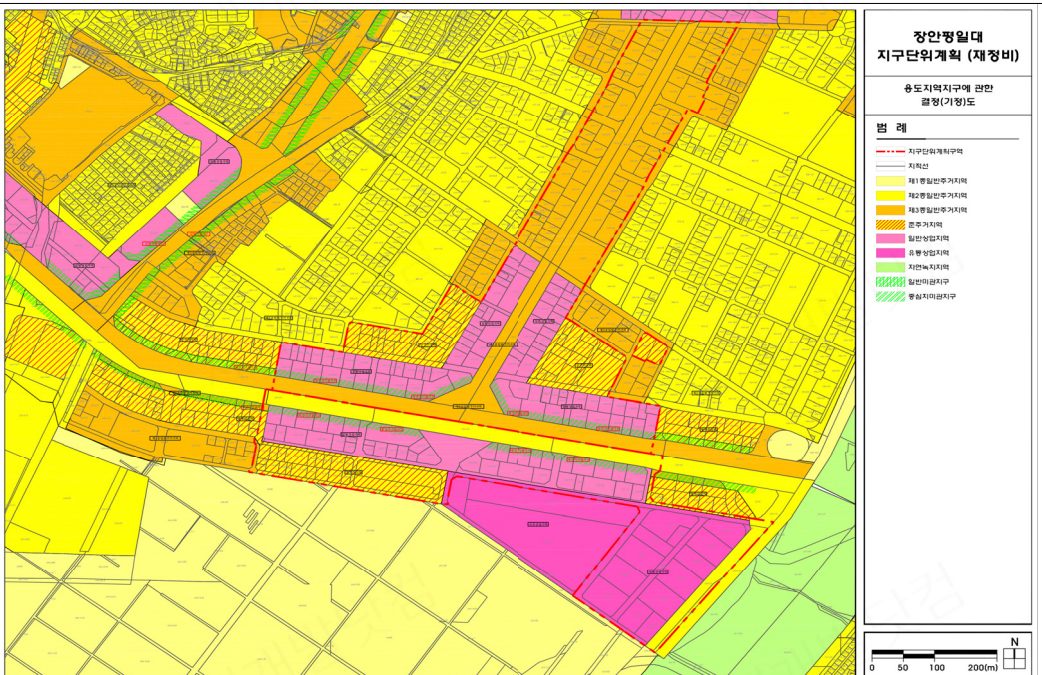


정정 후

■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기정)도(정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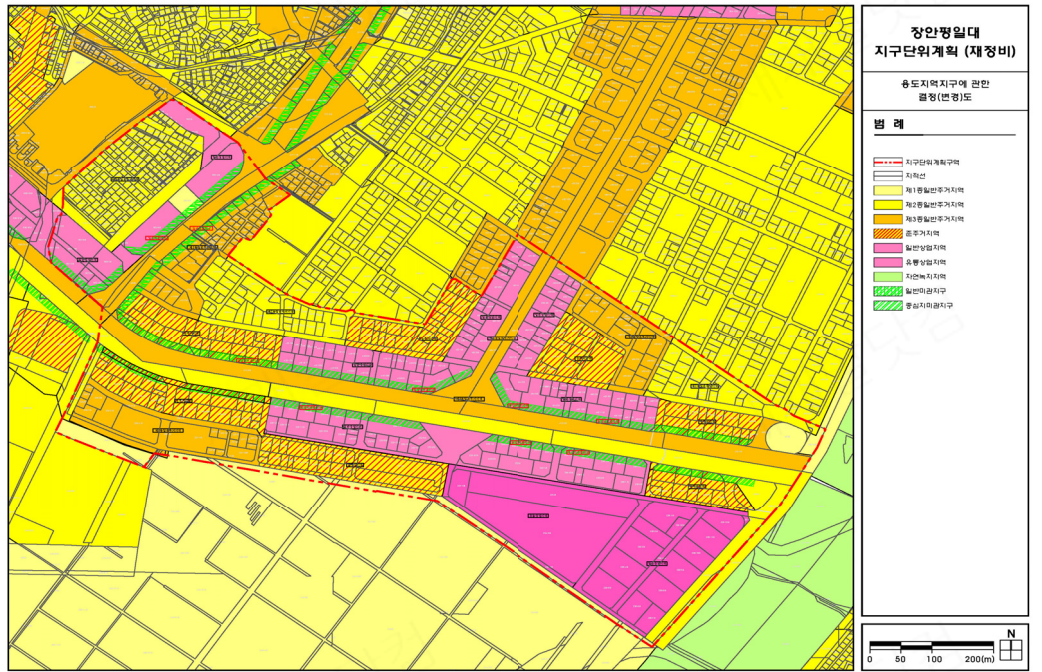


정정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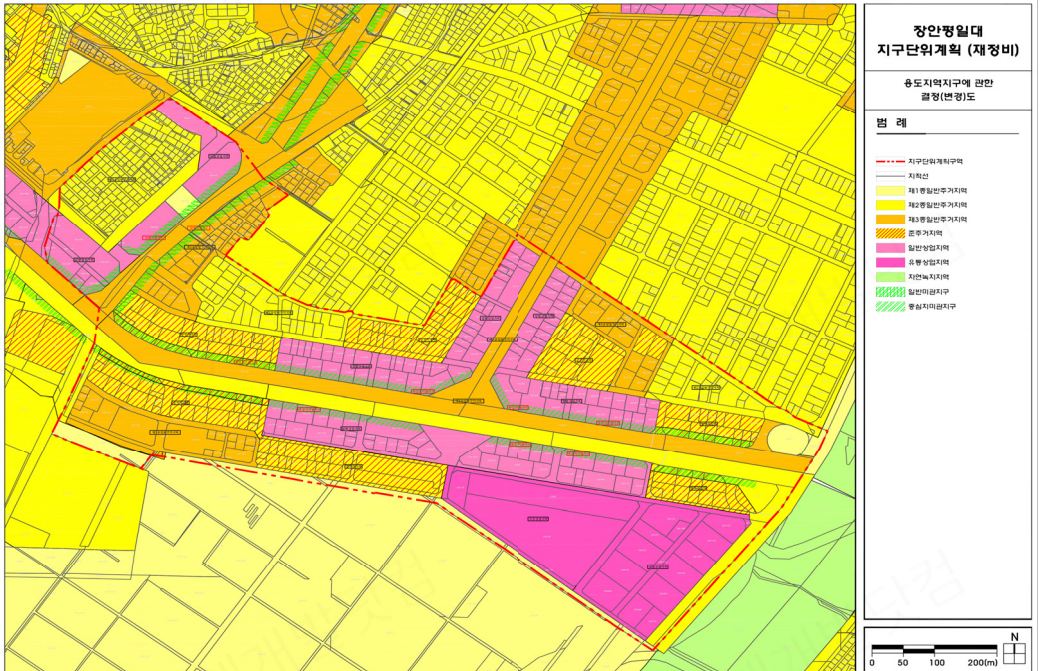


정정 후

■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(정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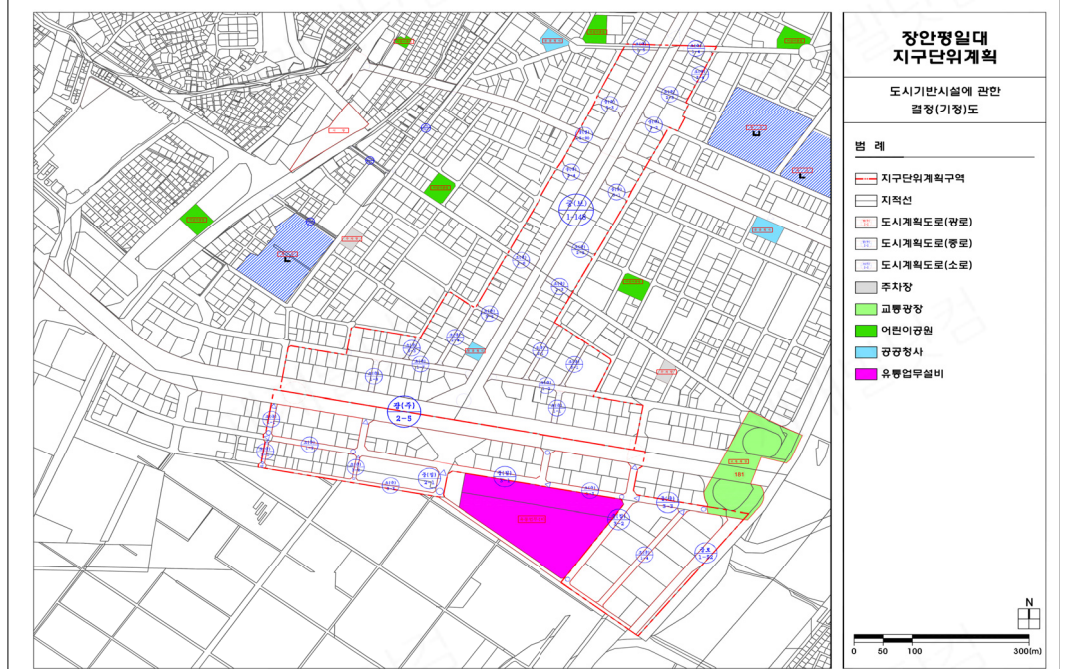


정정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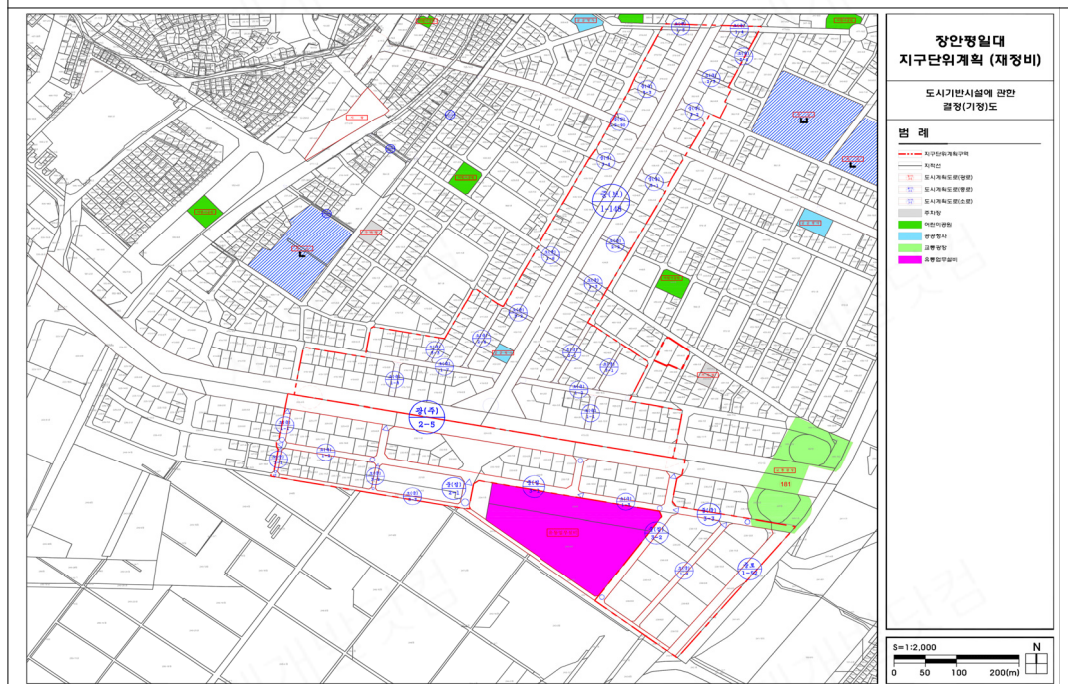


정정 후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(정정)



정정 전



정정 후



정정 전



정정 후